

(우)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http://www.kma.org>]/전화(02)6350-6532/전송(02)796-4487
기획정책국장 최길만(6552)/ 의료정책팀장 이병인(6537)/ 과장 김성호(6532)/ E-mail: popowe0@hanmail.net

문서번호 대의협 제676-15885호

시행일자 2023. 3. 31.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IMS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도928) 관련 안내

1.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 회원과 지자체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최근 IMS (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 요법) 판결에 대한 악의적이고 왜곡된 공문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2. IMS 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1년 12월 30일)은 해당 회원의 행위가 ‘IMS 보다는 침술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 일 뿐 ‘IMS 가 침술’이라는 판결이 전혀 아닙니다.

3. ‘IMS 는 의사들의 의료행위이며 소위 한방 침술과는 다르다’는 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법적으로 결론지어진 사안입니다.

4. 기존 ‘IMS 학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IMS를 시행하시는 회원 분들은 한방측의 협박에 신경쓰지 말고 평소대로 시행해 주시되, 아래 사항을 준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IMS 시행 전 의학적 진찰 소견을 차트에 확실히 기입해주십시오.

Ex: 심부건 반사 여부, SLR test(Straight Leg Raise), Motor power 등

2) IMS 시행 부위를 차트에 상세히 기입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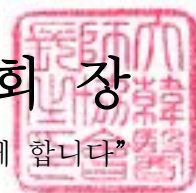
3) 시술 전 환자분들께 ‘IMS는 침술과 전혀 다른 현대의학의 자극요법임’을 미리 고지하여 주십시오.

4) 2008년 4월 28일 의료법 개정 전 ‘IMS 시술에 대한 미결정 의료행위 요양급여 결정 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하지 않으신 회원은 환자에게 IMS 시술료를 수납하시면 안됩니다.

5. IMS 건으로 한방측의 협박이나 공격을 당하신 분들은 의협 의료정책국(02-6350-6532)으로 연락 주십시오. 의협이 함께 하겠습니다.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각 시도지사회장, 대한의학회장, 26개 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 의사협의회장, 대한공공의학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